



제 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건설현장으로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2월에 공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종료로 역무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 종료로 해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2007년 또는 2008년 안전관리자의 역무를 수행한직(사업장 종료로 해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역무를 수행할 경우 신규교육 대상인지? 또는 보수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직무교육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총사자)은 '09.11 이후 신규로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신규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09.11 이전의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며, '10.12.31 이전 3월 및 이후 3월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 종료로 해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2008년 ~ 2009년 2월, 2009년 1월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09년 3월 교육실시 예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2. 2007년 또는 2008년 안전관리자의 역무를 수행한직(사업장 종료로 해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역무를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의 범위

건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에서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의 항목이 있습니다. 특정유니폼이라 함은 동질가용 파카(특정 메이커 동일제품 구입), 하절가용 반팔티셔츠(동일제품 구입)을 현장에서 안전관계자에게만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등이 포함되고,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급되는 조끼 및 유니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유니폼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자켓형 의복 등)라면 등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팔티셔츠는 건설현장의 유니폼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중, 사업소와의 안전거리에 대한 질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1)의 규정에서 사업소와의 안전거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저장능력 10톤이하의 사업소와의 거리가 24m로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3 제1호 다목의 규정과 바목 4항의 규정에서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를 지하화하면 즉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거리로 한다는 규정은, 설명대로 지하화를 하면 안전거리 24m(10톤경우)× 0.7을 하여 저장소 경계와 17미터를 유지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규정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저장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는 동 규정의 표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에 0.7을 곱한 거리(24m × 0.7 = 16.8m) 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1호가목1)가)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의 크기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목 | 전기관련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전기 관련 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바, 전기관련 전문지식 소유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채용하여 가설분전반 안전상태, 공도구 절연상태, 작업선 피복상태 및 접지저항, 용접기 전격방지기, 누전차단기 확인 등 가설전기의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무안전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저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친척 오빠의 소개로 반년 만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볼 때 이런저런 구두계약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지금 근무한지 2달이 되었는데 지금 제 상황이 (4대보험 미적용, 주 63시간 근무(토요일 8시간근무), 주중 공휴일은 출근, 근무 외 수당 없음) 처음 면접 때도 구두약속으로 너무 두루뭉술하게 “주말은 평일 보다 일찍 끝난다.” “공휴일은 최대한 쉬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 되었던지 일할수록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파트가 다르지만 오빠들도 같이 근무해서 설불리 그만두겠다고 말을 못 하겠네요.



오빠들과 빨리 그만두십시오.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크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조항을 다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질문자분 상시 근로인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심한 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도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퇴직금 적용이 안 됩니다. 주당 63시간의 근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업주의 주장이 맞습니다. 주당 40시간 내지는 44시간 기본 근로 이외에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할증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급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위법성이 없으니까요. 한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십시오. 퇴직금 적용을 하자던가 또는 연장할증을 적용하자던가, 월차나 연차를 적용하자던가 말입니다. 100% 안하려고 하죠. 자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법적으로) 왜 굳이 그런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루 속히 회사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